제367회국회(임시회)

제 안 설 명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6955)

2019. 04. 01.

국회의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

존경하는 홍영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30일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해 행정 각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를 통해 정책 활용과 국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의 총괄·조정기능 강화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아울러, 국가통계는 정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정책효과를 분석· 평가함에 있어 필수적인 자료로 그 작성과 보급 등은 정확하면서도 중립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국가통계 관리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외청 조직으로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부처와 기관이 다양한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분산형 통계작성 체계 하에서 통합적인 총괄조정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청장은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인 통계의 작성·보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직위임에도 국민의 인사청문을 거치지 않고 임명되고 있으며 그 임기 또한 불규칙적입니다. 이처럼 통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향후에도 다양한 문제제기와 논쟁이 예상되는 바, 통계의 전문성과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통계청이 독자적 법률 제·개정권을 확보하고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처로 격상하고, 통계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쳐 임명함으로써 중앙통계기관으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고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컨대 통계작성의 분산형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가통계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통계처의 격상과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